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사업 안내

---

2023년 4월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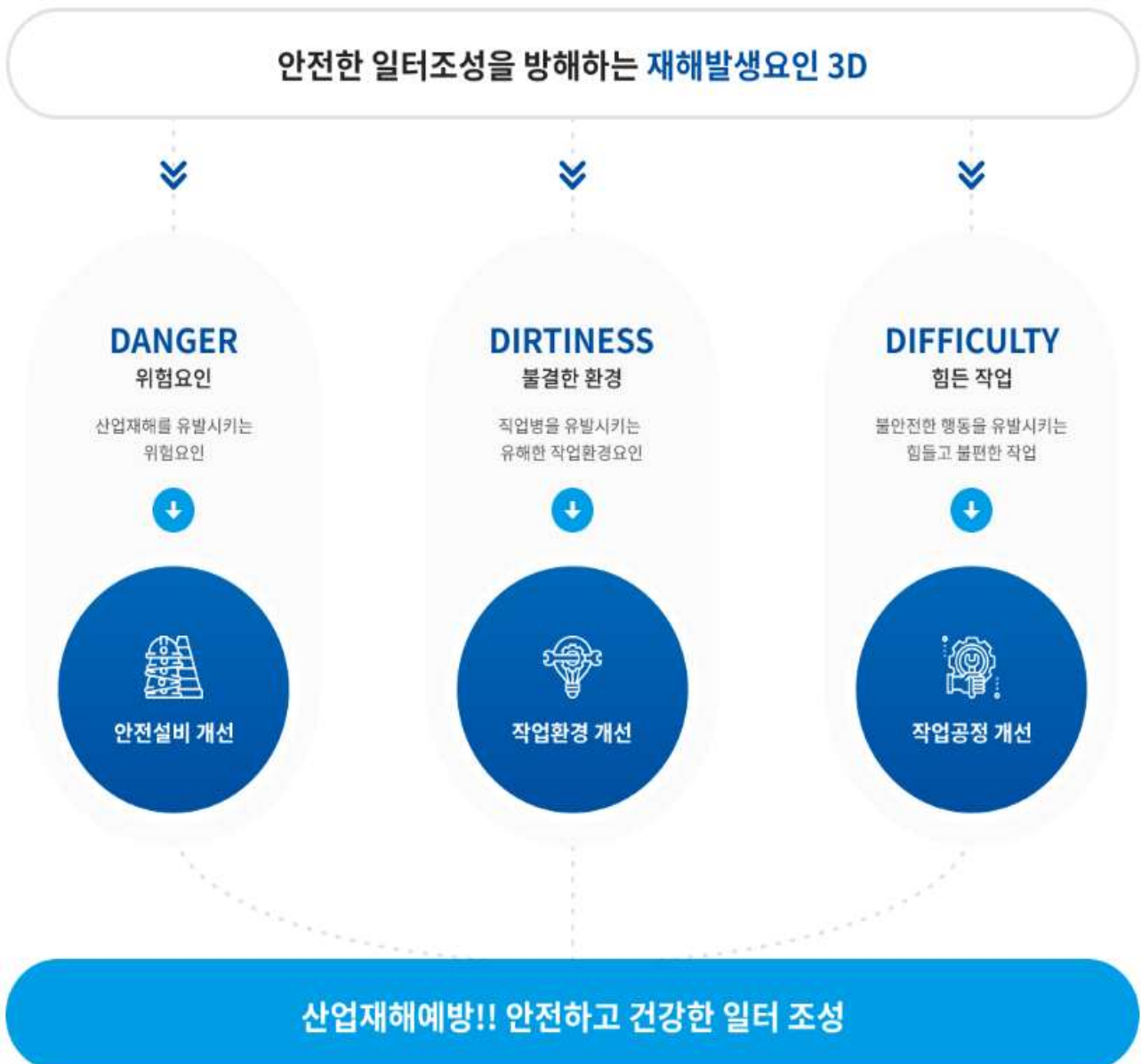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1
2.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 .....	7
3. 건강디딤돌 사업 .....	11
4. 직종별 건강진단 .....	16
5.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19
6.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 설치비용) .....	24
7.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	26
8. 안전투자 혁신사업 .....	29
9.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	33
10.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	36
11.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	38
1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	43
12-1. 안전분야 .....	43
12-2. 화학분야 .....	44
12-3. 보건분야 .....	45
12-4. 건설분야 .....	46
12-5. 서비스분야 .....	47
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49

#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 목적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 ◆ 지원대상 및 조건(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 완납)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제외)</li> <li>○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 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li> </ul> </li> <li>○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li> </ul> </li> <li>○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li> <li>○자율안전체계구축 등 중소기업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신속지원 : Quick-Pass)</li> </ul>
추락방지 안전 시설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보상보험에 가입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li> </ul>
산업단지 산재 예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li> </ul>

##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클린사업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li> <li>※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li> <li>※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li> <li>*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li> </ul>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li> <li>-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li> <li>-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속지원(Quick-Pass):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1회)</li> <li>※ 고위험개선 소요금액의 70%지원</li> </ul>
추락방지 안전 시설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현장 당 3,000만원까지</li> <li>※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판단금액의 50%~65%</li> <li>※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li> <li>※ 안전방망: 공사금액 3억 미만(65%), 20억 미만(60%), 50억 미만(50%)</li> </ul>
산업단지 산재 예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판단금액의 50%</li> </ul>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21809) ④ 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 ◆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공단 일선기관별 누리집 참고
  - 접속경로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관할지사 선택 > 알림마당

### ◆ 클린사업 추진절차

####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 ○ Track1(기존방식)



##### ○ Track2(Quick-Pass)



## 2.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 3.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 지원설비품목

####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의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손 쳐내기식 안전장치, 수인식 안전장치,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 방지장치 등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끼임방지시설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혹))

- 천장크레인(3톤미만, 설비 구조물 불량에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한하며 투자완료 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등)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단, 호퍼로더는 단독지원 불가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지게차 캐빈 등)
- 추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S마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방호울공사 등)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 및 복합가스농도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조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사회적 이슈품목(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등)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후방카메라 등)
- 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 설비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기)

## 2.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등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연동장치 등)
-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굴착기 AVM 일체형(카메라, 모니터, 통합제어장치, 접근감지센서 등)
- 굴착기 자동안전 킥커플러
-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 3. 추락방지 안전시설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

- 시스템비계(인증제품) :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안전방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
- 사다리형 작업발판(S마크 인증품) : 최대높이 3.5m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현장 당 2개 이내

---

※ 보조대상 제외

- ①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
  -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④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 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2.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

### ◆ 목적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 ◆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산재예방 시설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지원)</li> <li>○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용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li> <li>○ 대출금리 : 고정연리 1.5%</li> <li>○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총 10년)</li> <li>○ 지원방법 : 사업자구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li> <li>○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 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디드차타드)</li> <li>※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용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용자사업 추진절차 참고)</li> </ul>
	<p>&lt;지원제외 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용자금 지원 신청 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li> <li>②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li> <li>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용자금 지원 결정 불가</li> <li>④ '23년 용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금 재신청 불가</li> </ul> <p>※ 단,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용자금 지원 결정 가능</p>	

### ◆ 우선지원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채용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용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용자보조규정 제18조」 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 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7조」 또는 「법 제 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 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20) 또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
- ※ 일선기관별 용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공단소개>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알림마당)

## ◆ 지원절차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년 1월 9일 ~ 재원 소진 시까지('22년 재원: 3,563억원)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 접수방법 : 일선기관 온라인(클린사업누리집) 또는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접수)  
(☎ 대표전화: 전국 1544-3088)

## ◆ 지원대상 품목 및 유의사항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공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 프레스, 공작기계(CNC 머시닝 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 유의사항
  - 법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 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① 용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②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은 용자금 지원 결정 불가
  - ④ '23년 용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금 재신청 불가
    -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용자금 지원 결정 가능

##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1부(공단 소정양식)
  -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 세부 제출서류(신청서 등)는 자료실 게시 양식 참조

### ○ 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 ○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 필수 : 원가계산전문기관의 공사(제조)원가계산서 1부(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관할지역 연락처

1544-3088

### 3. 건강디딤돌 사업

#### ◆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건강 디딤돌」 사업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 ◆ 사업절차



#### ◆ 지원대상

##### 1. 작업환경측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시행규칙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참고 : 5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50인 미만 여부 판단

## ◆ 지원금액

### 1. 작업환경측정

-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100만원) ※ 신규 측정사업장 : '20년부터 측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측정비용*의 80%를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40만원)

\* 측정비용 : 공단 산정금액

###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지원대상에 따라 건강진단비용 차등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	------

50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인 미만 : 특검비용* 전액 지원</li> <li>○ 30인 이상 50인 미만 : 특검비용*의 90% 지원</li> </ul>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검비용*의 90% 지원</li> </ul>
건설일용직 (건설현장 공사금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억 미만 : 특검비용* 전액 지원</li> <li>○ 50억 이상 800억 미만 : 특검비용*의 80% 지원</li> <li>○ 800억 이상 : 특검비용*의 70% 지원</li> </ul>

\* 특검비용 : 공단 산정금액

\*\*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계약한 공사금액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유해인자별 제 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함(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 ※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실시근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비용지원 불가

## ◆ 신청방법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누리집 공지 예정
  - 5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3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대상선정

- 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또는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발신 불가)
-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1. **공통**

-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누리집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출력 방법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결과확인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선정 하되,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2.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3.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검자의 검진 유해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 환경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등을 검진 기관에 적극 제공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건설일용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 **비용청구, 비용지급·결과 통보,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비용청구 :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 공단의 비용지급 :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공단은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 시 SMS 수신 불가)
-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052-7030-500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052-7030-500
-------------	--------------	-------------	--------------

## 4. 직종별 건강진단

### ◆ 목적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없는 필수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

### ◆ 사업절차



### ◆ 지원 대상

- '23년 신규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업자,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배송기사 · 화물차주
- 건설기계운전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환경미화원(30인 미만)
  - ※ 3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30인 미만 여부 판단

◆ **지원 금액** : 전체 건강진단 비용의 80%(1·2차 항목)

직종	표적 질환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가전제품 수리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방문판매업 자 · 골프장 캐디 · 소프트웨어 기술자	뇌·심혈관질환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 배송기사 · 화물차주	뇌·심혈관질환
건설기계운전자	호흡기질환, 뇌·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 **신청 방법**

- 공단 누리집에서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 신청경로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사업신청
  - ※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 **대상 선정**

- 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직종, 사업장 규모 등)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안내를 SMS로 전송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수신 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누리집을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
  - ※ 출력방법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결과 확인
  -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 참여기관 현황은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을 참조

#### ◆ 비용 청구 및 지급

- 건강진단 결과는 공단 K2B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 비용 청구
- (공단)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걱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 건강증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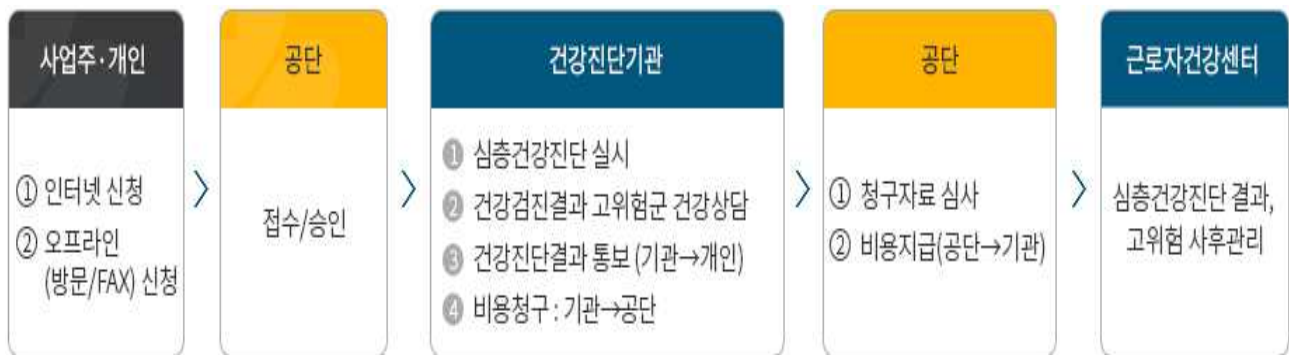
052-703-0652

## 5.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 목적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에게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위험이 매우 높은 노동자에게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질환 예방

### ◆ 사업절차



#### ○ 신청방법

- 공단 누리집, 오프라인(검진기관 방문/FAX) 신청
  - ※ 누리집 신청경로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 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
  - ※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 ○ 대상선정

- 신청한 검진 희망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SMS 발송하고, 지원대상인 경우 검진 희망자 별로 건강진단 안내, 검진 시 준비사항, 유의사항 등을 SMS 전송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신청자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 ※ 확인방법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 심층건강진단 실시
  - (예약)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 일정 예약
    -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검진 실시
  - (준비)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존 건강진단결과 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어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등) 중 1개를 사전 준비
  - (방문)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

##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② 공복혈당 126mg/dl 이상
      - ③ 총콜레스테롤≥240mg/dl 또는 LDL≥160mg/dl 또는 중성지방≥200mg/dl
      -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 4)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 ※ 뇌혈관, 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또는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해당 장기(뇌·심장) 치료 중에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 지원대상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 ◆ 검사항목 : 1. 기본검사, 2. 선택검사로 구분하여 건강진단 실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 1. 기본검사

- 지원금액 : 170,400원(기본 검사비용 213,000원의 80%)  
 ※ 자부담금 42,600원(213,000원의 20%)
- 검사항목 :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구분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검사항목	① 문진 및 의사상담 ②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① 신체계측 (키·몸무게·허리둘레·체질량지수) ② 혈압 측정	① 공복혈당 ② 당화혈색소(HbA1c) ③ 총콜레스테롤 ④ HDL콜레스테롤 ⑤ 트리글리세라이드 ⑥ LDL콜레스테롤 ⑦ 혈청 크레아티닌 ⑧ 신사구체여과율(e-GFR) ⑨ 호모시스테인	① 요단백 ② 미량알부민	① 경동맥 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 CT (석회화 점수) ③ 심전도

### 2. 선택검사

- 지원금액 : 선택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 지원대상
  - 1) 총콜레스테롤  $\geq 310\text{mg/dL}$
  - 2) 고혈압  $\geq 180/110\text{mmHg}$
  - 3) 공복혈당  $\geq 126\text{mg/dL}$  또는 당화혈색소  $\geq 6.5\%$
  -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 이상
  - 6)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발병위험도 5% 이상
  - 7) 만 55세 이상 고령자
- 검사항목 : 희망자에 한해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선택 1)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	-----------	-----------	-----------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기본검사 비조영→조영으로 대체)	뇌혈관 MRA
인정금액	12.5만원	12.5만원	20만원
지원금액	10만원	10만원	16만원

## ◆ 사후관리

### 1. 건강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초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 주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건강진단 의사가 인정하는 자
  - (희망자) 심층건강진단 후 근로자가 전문의 상담을 희망하는 자
- 지원방법 : 건강진단 결과 전문의 상담 실시
- 지원금액 : 전액
- 연간 지원횟수
  - (초고위험군) 1인당 최대 10회, (희망자) 1인당 최대 5회
- ※ 지원주기는 1개월 이상

### 2. 추가검사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진단결과, 뇌심혈관질환이 의심되거나 발병 우려가 있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건강진단 의사(전문의)가 인정한 자
- 검사항목 : 심층건강진단 선택검사 항목 중 건강진단 의사(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
  - ※ 건강진단 결과, 질환이 의심되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초 건강진단 시 선택검사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불가
- 진단기관 : 심층건강진단기관 중 해당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실시
- 지원금액 : 선택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인정금액	12.5만원	20만원	20만원
지원금액	10만원	16만원	16만원

### 3.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자
- 지원방법 :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상담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 영양, 금연 등 생활 습관 개선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상담 실시
  - 공단에서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 중 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건강진단 실시
- ※ 지역별 심층건강진단 실시가 가능한 기관은 공지사항에 게시

문의처 :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

052-703-0649

## 6.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 설치비용)

### ◆ 목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 지원절차



### ◆ 지원대상

- 가스, 증기, 미스트 흡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 지원대상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지원금액

- 한도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흙은 최대 2천5백만원)
-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공단 판단금액의 50%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 공사원가계산 등을 검토한 공단의 판단금액

### ◆ 신청방법

- 공단 누리집 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공지사항의 신청 서식 활용
  - ※ 공단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 지원품목

-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분진작업, 고열작업 또는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흙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분진작업, 고열작업 또는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흙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 지원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의 1항 2호(허용기준), 3호(금지물질), 4호(허가물질), 5호(작업환경측정), 7호(관리대상)가 해당

문의처 : 지역 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1644-8845

## 7.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 ◆ 목적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 지원절차



### ◆ 지원대상

- 개별휴게시설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 ※ 지원대상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⑤ 건설업(건설업 본사를 통한 건설현장 지원불가, 단 건설업 본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정)
- 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 공동휴게시설 :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공동 휴게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

## ◆ 지원금액

○ 개별휴게시설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지원비율	적용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li> <li>- 7개 취약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장</li> <li>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li> <li>-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보유 사업장</li> </ul>
공단 판단금액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li> <li>- 그 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li> <li>-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만 신청 시 50% 지원</li> </ul>

○ 공동휴게시설 : 최대 1억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신청 주제별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 사업주 신청 시 : 사업주 당 3천만원 초과지원 불가 (한도 예시 : 2개 사업장이 설치 시 6천만원, 4개 이상 사업장 신청시 1억원)</li> <li>-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 신청 시 : 최대 1억원</li> </ul>

## ◆ 신청방법(2023년 접수 마감)

- 공단 누리집 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공지사항의 신청 서식 활용
- ※ 공단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 지원품목

- 휴게실 :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

- ① 신규설치 :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② 개선 :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기존 휴게실 리모델링 포함
- ③ 컨테이너하우스·조립식 휴게실 : 부지 내에 설치하는 휴게실 전용의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실
- 휴게비품·설비 : 휴게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 ① 냉·난방기 : 휴게실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18~28℃ 조절기능, 이동식 제외)
  - ② 쇼파·의자 : 휴게용 쇼파·의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 ③ 테이블·탁자 : 휴게용 테이블·탁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 ④ 조명시설 : 휴게실 내부 조명 및 조도 조절장치(100~200lux 조절기능)

문의처 : 지역 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1644-8845

## 8. 안전투자 혁신사업

### ◆ 안전투자 혁신사업이란?

사망사고 발생 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3년간 9,084억원

### ◆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 위험기계 교체

##### ① 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

- 카고형 이동식 크레인(`09.9.30. 이전 생산 기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09.6.30. 이전 생산 기계)

-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원치식·유압식)

##### ② 안전검사기계\*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위험기계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 ○ 공정개선

##### ① 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② 고위험 3대업종\* 해당 사업장\*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 사업 목표 및 예산

○ 연도별 사업목표 : 위험기계 및 뿌리산업 시장의 자발적 변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 사업 대상 : 15,487대, 개소

○ 지원액 : 9,084억원

## ◆ 지원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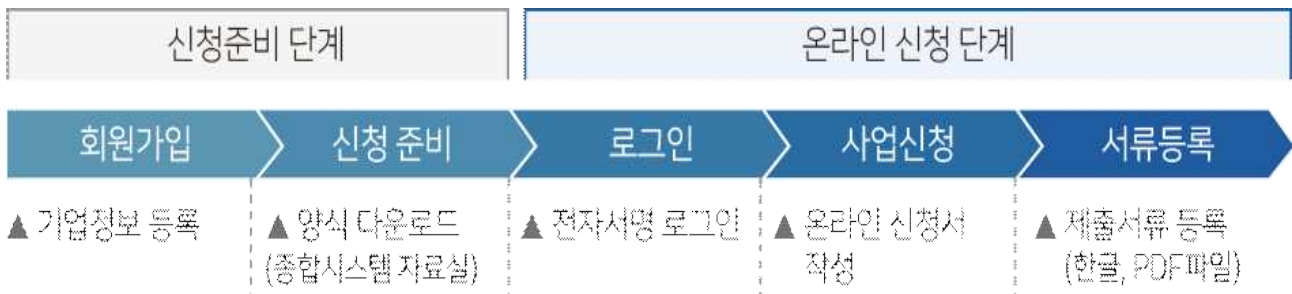
- 설비 제작 비 등 사업비 50%
  - 사업비 50% : 기계·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비, 기존 설비 해체 비용 등
- 사업비 등 지원 범위 및 조건

구분	①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교체	② 리프트 교체	③ 노후 위험기계 교체	④ 뿌리공정 개선	⑤ 고위험 3대 업종
교체용량	보유 용량 대비 교체 용량 제한 없음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	
지원금액	옵션과 관계없이 시장가격의 50%		최종 원가정산기관 정산 금액의 50%		
지원대상	이동식장비 실소유자 대상 ※ 임대 및 지입차주 등 참여 가능 (*20.12.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공장 등 소유주		

- 투자기업은 지원 사업별 제출서류 일체를 사전 준비하여 「안전투자 혁신 사업 종합 운영시스템(이하, 종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 신청 기간은 공단에서 예산,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로 나누어 지정

## ◆ 신청방법

- 종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anto.kosha.or.kr>)



## ◆ 제출 서류

### 1. 공통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2) 산재보험 완납증명원(발행 후 3개월 이내)
-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
- 4) 견적서
- 5) 정보 활용 동의서(원본)

### 2. 위험기계 교체

- 1) 자동차등록증(사본)(이동식 기계)
- 2)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동식 기계)
- 3) 안전검사 관련 서류(이동식 기계)
- 4) 장비 사진(이동식 기계)
- 5) 기계장치 명판이 훼손되어 모델명 및 제작연월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작증명서(첨부 자료실 참조)
- 6) 사업계획서(리프트 노후위험기계)

### 3. 공정개선

- 1)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사업목표, 개선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사업추진 성과, 기타

### 4. 뿌리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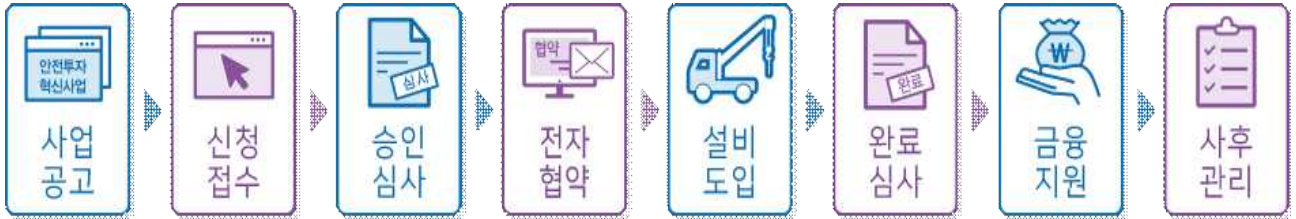
- 1) 사업계획서 :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사업목표, 개선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사업추진 성과, 기타

## ◆ 지원 방식

○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또는 보조금 지원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방식에 한해 진행

○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처리절차 도식도



문의처

1644-4555

## 9.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 ◆ 목적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분소)를 설치하고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

### ◆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대상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 작업환경(작업관리)와 관련된 상담
  - 안전보건교육
  - 이동 건강상담 등

### ◆ 구성인력, 운영시간, 이용요금

- 구성인력 : (작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 ※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
- 이용요금 : 전액 무료(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원)

## ◆ 센터 및 분소 현황(23개 센터, 21개 분소)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인천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광주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대구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경남근로자건강센터((주)터직업환경의학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울산근로자건강센터(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충남근로자건강센터(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구미강동병원)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부산근로자건강센터(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전남 여주시 무선중앙로 23
대전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경산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전주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강원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 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충북근로자건강센터((사)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전라남도 영암군 상호읍 나불로 163
성남분소(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김포양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대구달서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지하
완주분소(전주근로자건강센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창원분소(경남근로자건강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평택분소(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남양주분소(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군포분소(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148번길 17
구미분소(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영천분소(경산근로자건강센터)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광주광산분소(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
대구달성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양산분소(부산근로자건강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
김포고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
서울중구분소(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서울성동분소(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
울산북구분소(울산근로자건강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인천부평분소(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춘천분소(강원근로자건강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연동분소(제주근로자건강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아산분소(충남근로자건강센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문의처(전국 대표번호)	1577-6497
--------------	-----------

## 10.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 ◆ 목적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대상 :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에 종사(사고수습 등 업무 담당자)하는 사람 등
- 서비스 내용
  -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화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관리
  - 필요 시 전문치료 연계

### ◆ 구성인력, 운영시간, 이용요금

- 구성인력 :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 ※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
- 이용요금 : 전액 무료(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원)

◆ 센터 현황(근로자건강센터 내 설치·운영)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경기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대전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대구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경남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울산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충남직업트라우마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전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제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문의처(전국 대표번호)	1588-6497

## 11.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 ◆ 건강관리카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

번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 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정성 음영이 있는 사람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 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

		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 (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p>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p> <p>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분쇄 또는 채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p> <p>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p> <p>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채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p> <p>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p> <p>2) 도자기·내화물·형상도제품(형상을 본떠 흑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p> <p>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p> <p>1) 도자기·내화물·형상도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p> <p>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p> <p>하. 옥내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p>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p>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가.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p>	
8	<p>가. 염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p>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p>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p>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p>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p>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p>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p>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p>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p>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p>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p>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4	<p>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p>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5	<p>비파괴검사(X-선) 업무</p>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 ◆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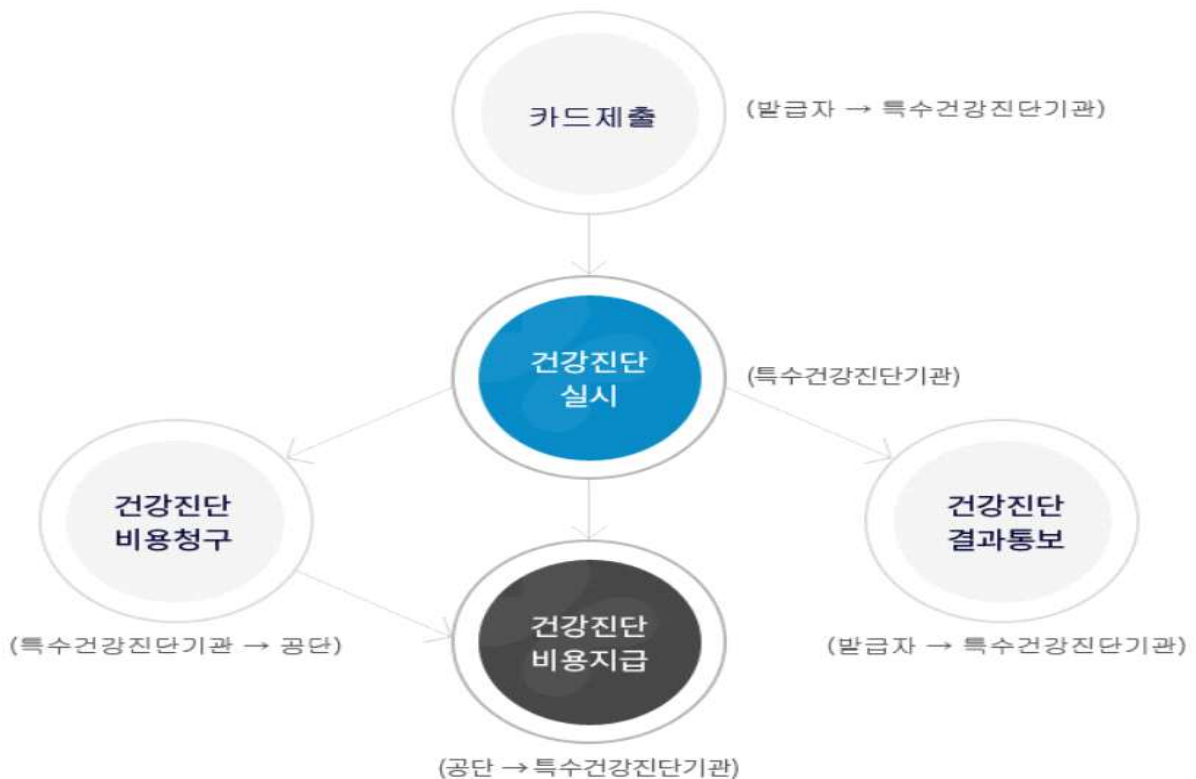
-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임. 아직도 암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노동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 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는 작업전환이나 이직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며,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 본부/ 지사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함

##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 건강관리카드는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
-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발급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

##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 현직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같음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는 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카드를 소지한 이직 노동자 등은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건강진단 비용은 노동자가 지불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지급



###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방법

- 이직 등의 사유로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카드소지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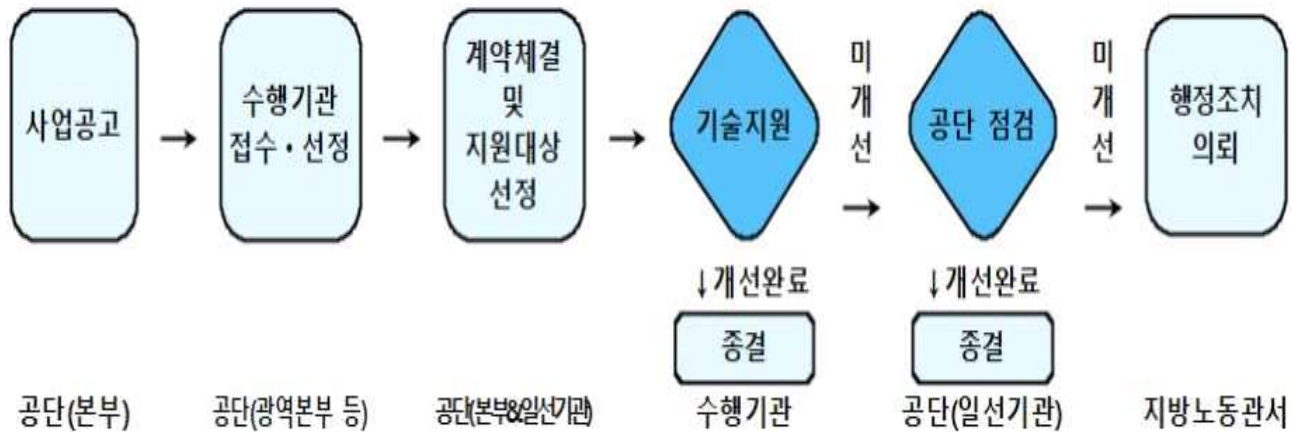


문의처(산업보건실)

052-703-0645

## 1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 ◆ 사업 추진절차(분야별 공통)



### 12-1 안전 분야

#### ◆ 목적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에 기여(사업물량 : 95,000회)

#### ◆ 사업 추진방향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고위험사업장(위험기계·기구 보유 등) 우선 선정·지원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 지원 내용(사업장당 최대 4회 지원)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노동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3, 052-7030-776

## 12-2

## 화학 분야

### ◆ 목적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에 기여(사업물량 : 30,000회)

### ◆ 사업 추진방향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화학물질 제조·취급·유통·설비 보유 사업장, 화학업종 등 화학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 우선 선정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 지원 내용(사업장당 최대 4회 지원)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노동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3, 052-7030-776

## 12-3

## 보건 분야

### ◆ 목적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사업 물량 : 71,590회)

### ◆ 사업 추진방향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 지원 내용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노동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4, 052-7030-789

## 12-4

## 건설 분야

### ◆ 목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사업물량 : 140,000회)

### ◆ 사업 추진방향

- 추락 등 사고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고위험 건설현장 발굴·지원 강화
- 작업진행 상황 관찰 및 위험요인 확인·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효과 극대화
- 1억원 미만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및 원격지원 등 인적관리 강화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핵심 안전수칙 및 추락 등 사고사망 주요 위험요인 집중 확인 및 개선 지원

핵심 안전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락 예방조치 :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막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li> <li>○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li> <li>○ 안전점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TBM) 실시</li> </ul>
주요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사다리,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고소작업차(대), 달비계, 철골,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사면·암반</li> </ul>

※ 기타 사고성 재해발생 위험요인 도출 및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개선확인 : 보호구 미착용,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상주하여 조치완료 확인
- 안전교육 :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공유가 가능토록 맞춤형 standing 교육 실시(집합교육, 면담교육 등)
- 교육내용 : 핵심 안전수칙(추락·보호구·안전점검), 현장 주요 위험요인(안전조치 현황 및 대책)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3, 052-7030-776

## 12-5

## 서비스 분야

### ◆ 목적

50인 미만 서비스업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사고사망만인률 감소에 기여(사업 물량 : 62,500회)

### ◆ 사업 추진방침

- 사업장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예방자원 효율성 강화
- 사고사망 직접원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진 리더십 · 근로자 참여) 중점지원
- 건물관리업은 이동사다리 등에 의한 추락 재해예방에 집중 기술지원 실시

- 음식업 중 이륜차 배달원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직접고용사업장 및 실태평가 미흡·불량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 전개
- 사회적 이슈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음식업종 조리종사자 호흡기질환 예방에 집중

## ◆ 지원 내용

① 사고사망 위험요인·필수 준수사항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① 사고사망 위험요인·필수 준수사항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지원

사고사망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추락 : 이동식 사다리    ② 전도 : 계단 및 통로</li> </ul> </li> <li>○ 음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딪힘 : 이륜차    ② 전도 : 계단 및 통로    ③ 끼임 : 조리기구</li> </ul> </li> </ul>
필수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내 : 위험성평가 제도 및 지원시스템(On Line, KRAS)</li> <li>②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샘플링 실시 및 제공</li> </ul> </li> <li>○ 핵심안전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추락예방 :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2인1조 작업(이동식 사다리) 등</li> <li>② 끼임예방 : 방호장치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li> <li>③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등</li> </ul> </li> </ul>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노동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4, 052-7030-789

## 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 사업개요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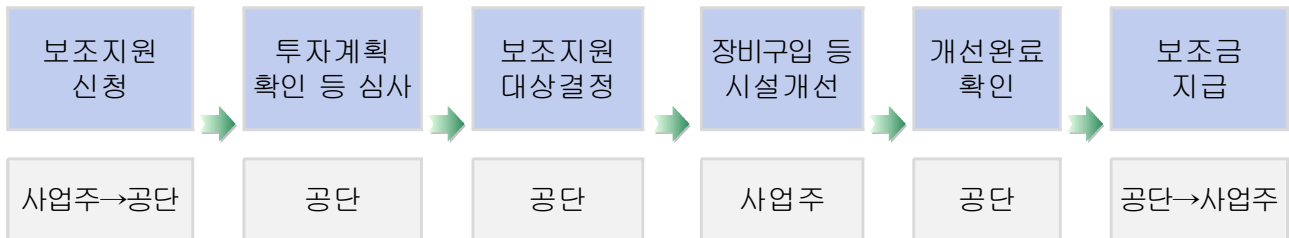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 참여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 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사고 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14개(17종)

구분	취급품목
안전품목 (11개)	①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②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③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④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⑤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⑥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전도/충돌방지, 자동 서행·정지, 3종) ⑦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⑧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⑩ 인화성 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⑪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보건품목 (3개)	① 근력보조슈트 ②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③ 스마트 귀마개

## ◆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1. 공모신청

#### ○ 신청기간

- 1차 : 2023년 4월 3일(월) 14시 ~ 4월 21일(금) 14시
- 2차 : 2023년 5월 말 예정

※ 2차 이후 신청접수 등은 1차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공급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출
  -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③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 특수형태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⑤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⑥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⑦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 시
  - ⑧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 참조
  - 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로써 일부품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출함
    - \*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 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 ⑪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 2. 보조지원 결정

-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지원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을 통해 확인 가능 (5월中 예정)
  -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 3.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

- 시설개선 :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 확인요청 :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필요서류를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출

### 4. 투자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투자완료 확인 :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적정 여부,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등 지원품목 사양,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
  - ☞ 부적정한 경우, 1개월 보완기간 후 적정여부 확인(부적정시 결정 취소)
- 보조금 지급 :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 보조금 지급일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23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

### ◆ 기타사항

- 부정수급 :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조 지원금 환수 및 제한
- 사후관리 :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문의처(대표번호)

1544-3088